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38
----------	-------

발의연월일 : 2026. 3. 25.

발 의 자 : 정춘생 · 황운하 · 신장식
김태선 · 차규근 · 이해민
이기현 · 서왕진 · 김선민
김준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화재예방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일정한 공간에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집적되어 통합운영 관리되는 데이터센터는 전력설비,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배선, 고열장비 등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데이터센터 화재는 단순한 물적 손해를 넘어서 국가·사회 기반 서비스 중단, 금융시스템 마비, 통신장애 등 국민 일상 및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소방관서장은 화재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곳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데,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소방 관련 인력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기·가스 등 주요 화재 원인인 분야의 전문인력도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범위에 추가하여 정기적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화재안전조사에 있어 소방전문가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건축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화재안전조사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40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람을”을 “사람 및 전기·가스·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의 데이터센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①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 관리자, 그 밖에 화재안전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u>사람을</u>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① ----- ----- ----- ----- <u>사람 및 전기·가스·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 ----- ----- -----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1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의 데이터센터
14. (생 략)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